

● 제306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3148)

2022. 4.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3148

I.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안경위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22. 3. 10.
- 다) 회부일 : 2022. 3.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영유아의 발달상태 평가, 감염성 질환 및 일반질환 관리, 교직원 대상 응급상황 대처법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건강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대상 사업이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9조의4(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신설), 제22조(비용의 보조)에 의한 사무로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의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제5조(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 후,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항에 따

라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신규사무)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나. 위탁내용 : 정원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일체

○ 위탁사무 내용

- 영유아 건강관리

- 영유아 신체계측 및 건강사정
- 영유아 발달단계 평가 및 전문기관 의뢰
- 전염성 질환과 일반질환 발견 및 전문기관 의뢰
- 영유아 대상 질병예방 교육

- 보육교직원 대상 보건교육

- 구급함 구비 및 사용법 교육
- 응급상황(고열, 호흡곤란, 낙상, 화상 등) 대처법 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 보호자와 원아의 건강상태 공유(가정통신문) 및 상담

- 가정통신문 발송 및 건강상담, 전문 의뢰기관 안내
-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정통신문 번역(영어,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등)

- 기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 방문대상 : 정원 40인** 이하 서울시 어린이집 1,500개소

○ 방문주기 : 월 1회

※ ① *정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간호사를 1명 배치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② **정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40인 이하로 한정

③ '12년~'21년까지 일반용역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함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항3호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9조의4(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 ②항

라. 위탁유형 : 사무형(신규)

마. 민간위탁 필요성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지원은 영유아의 발달상태 평가, 감염성질환 및 일반질환 관리, 교직원 대상 응급상황 대처법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에 의학적인 전문지식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임

○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연중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공백기를 해소하기 위함

바. 위탁기간 : 2022. 7. ~ 2024. 12. 31.(2년 6개월)

사. 소요예산 : 775,837천원(인건비 626,047천원, 사업비 149,790천원 등)

- 1,500개 어린이집 대상, 6개월 사업비

- 총괄책임자, 방문간호사(37명), 교육간호사 등 총 41명

※ 방문간호사 37명×어린이집 40.5개소(월)=1,500개소

아.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영유아 건강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간호사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항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 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안내 및 건강검진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9조의4(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22.2월 신설, 3월 공포)

제22조(비용의 보조) 13. 그 밖에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드는 비용

나. 예산조치 : 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추경 예정(예산담당관 협의 완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일반용역 단년도 사업기간 : 2012년 ~ 2021년

○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

- 2022.1.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업'을 행정사무로 볼수 있는지 법률자문 완료

- 2022.1. : 민간위탁추진 사업계획 수립

- 2022.2.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적정)

○ 향후계획

- 2022.3. : 시의회 동의 및 추경 확보

- 2022.7. : 민간위탁 사업 추진

※ 작성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이복남 (☎ 2133-7577)

Ⅲ. 검토의견

1 동의안의 제출 경위 및 사무의 내용

-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1)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모자보건법」 제3조2), 「영유아보육법」 제36조3),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19조의4⁴⁾ 및 제22조5)에 따라 건강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파견하여 영유아의 발달상태 평가, 질병관리 등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음6).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4)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19조의4(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5)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12. <중략>

13. 그 밖에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드는 비용

-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용역 방식(사무관리비)을 통해 서울특별시간호사회가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사무관리비는 행정사무와 직결된 비용을 지급하는 용도로 편성·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⁷⁾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사업 예산은 편성되지 못하였음.
- 시장이 위탁하려는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위탁사무 내용>

1) 영유아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신체계측 및 건강사정 · 영유아 발달단계 평가 및 전문기관 의뢰 · 전염성 질환과 일반질환 발견 및 전문기관 의뢰 · 영유아 대상 질병예방 교육
2) 보육교직원 대상 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급함 구비 및 사용법 교육 · 응급상황(고열, 호흡곤란, 낙상, 화상 등) 대처법 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3) 보호자와 원아의 건강상태 공유 (가정통신문)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통신문 발송 및 건강상담, 전문 의뢰기관 안내 ·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정통신문 번역(영어,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등)
4) 기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 서울시는 금번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에 본 동의안과 함께 2022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을 위한 민간위

6) -소규모 어린이집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추진계획. 건강증진과-1709(2022.1.25.)

7)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2021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pp. 58-66.

탁비로 775,837천원(인건비 626,047천원, 운업비 등 149,790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8).

- 참고로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음9).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민간위탁 추진절차>

- 2022.4. 사업예산 편성(추경) (건강증진과)
- 2022.5. 심의의뢰일상감사 (감사위원회)
- 2022.6.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건강증진과)
- 2022.6.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건강증진과)
- 2022.6. 민간위탁 비용 심사 (계약심사과)
- 2022.7. 민간위탁협약서 심사 (법률지원담당관)
- 2022.7. 민간위탁사업 추진 (건강증진과)

2 민간위탁 대상여부 검토

- 「모자보건법」 제3조10) 및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11)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사업 관련 시책 마련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8) 2022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시민건강국(2022.3.17. 기준)

9)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건강증진과-1535(2022.1.24.)

10)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19조의4¹²⁾에서는 시장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¹³⁾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¹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시장의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제9호¹⁵⁾에는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영유아의 발달상태 평가, 질병관리 등의 의학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사무의 기준이나 추진근거 등이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
- 12)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19조의4(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13)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② <중략>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 | |
|--------------------------|--------------------------|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 1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8. <중략>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3 민간위탁 사무의 필요성

- 영유아기는 평생의 건강기반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성장발달 지연이나 건강위험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기관에서 적절한 관리를 받을 경우 정상으로 복원이 가능한 시기로 알려져 있으며¹⁶⁾ 아동 발달에 있어 개입의 필요성 및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¹⁷⁾라는 측면에서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보육시설은 면역체계가 완성되지 못한 영유아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으로 영유아 건강 및 안전 지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각별히 요구되며 보육시설에서 전염성 질환 발병에 따른 관리는 기관과 보육교사의 직무 중 중요한 부분임¹⁸⁾.
-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¹⁹⁾에 따라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별표1 참고)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은 간호사에 대한 배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규모 어린이집에 방문간호사를 파견하여 원아의 발달상태 평가, 질병관리 등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사업은 그동안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 시 매년 계약체결에 4~5개

16) 남혜경(2016) 취약계층과 일반군 영유아의 건강관리 현황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요구도 비교조사.

17) 박인의, 문다슬, 이재경, 오인성, 정례주(2020) 국내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제도 분석.

18) 권혜진(2021) 코로나19(COVID-19) 감염증에 대응하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건강관리직무와 수행 경험

1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월이 소요되어 서비스 공백기가 발생하고 영유아 건강관리에 연속성이 떨어져 어린이집으로부터 지속적인 방문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특수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²⁰⁾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19조의4²¹⁾에서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소관 사무로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²²⁾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²³⁾에서 조례나 규칙으

20)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1)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19조의4(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2)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② <중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로 정한 시장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사무를 특수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추진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전문성, 효율성을 접목하여 소규모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향후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의학적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본연의 사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음.

문 의 처

우현재 입법조사관 (02-2180-8155)

<별표 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30.>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이 경우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 1)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 8)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기본보육의 보육교사는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연장보육의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한다.
 - 가)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나) 만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간호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어야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조리원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

바. 그 밖의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